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663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호, 한경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화정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합계 720,847,34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9. 2. 26. 사망하자 B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4.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9. 4. 11. 접수 제4760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이 있다.

라. 한편, B은 위 나.항 기재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019. 4. 9.에 이루어졌고, 그 무렵인 2019. 4.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제척기간의 경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를 전·후하여 이미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B이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단독소유함에도 단지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망인 사망 이후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가 망인과 함께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망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협의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사해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주장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선의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이 상속포기를 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역시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2/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별지